

DMC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약서

서울산업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과 (사)디엠씨코넷(이하 “코넷”이라 한다), DMC산학진흥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 은 서울특별시 첨단 클러스터인 DMC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공동사업 추진 및 기관간에 상호 밀접한 교류와 협력을 하기로 하며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진흥원 - 코넷 - 재단이 DMC거버넌스, DMC연구개발지원사업, DMC입주기업지원사업, 교육 아카데미사업의 공동 협력을 통하여 상호 교류에서부터 미래형 첨단기술 개발 및 사업화까지 DMC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체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협력분야) ① 본 협약에서 정하는 진흥원 - 코넷 - 재단 간 협력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DMC 거버넌스 구축 및 발전협의회 운영
2. DMC 입주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
3. DMC 입주기업 기업지원 프로그램
4. DMC 입주기업 맞춤형 인재육성사업
5.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국내외 우수 클러스터 협력 네트워크 구축
6. 각 기관이 보유한 공간 및 시설의 공동 활용
7. 각 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및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협조
8. 기타 각 기관 간의 상호 관심분야 협력

② 각 기관은 제1항의 상호 협력분야의 이행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협력하여야 하며, 각 기관이 보유한 예산, 시설, 인력 등 자원을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제1항의 협력분야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3조(비밀유지) 각 기관은 본 협약에 의하여 알거나 취득하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, 영업상 정보에 대하여 최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상대기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효력발생 및 유효기간) ① 이 협약의 효력은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그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

② 이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③ 어느 한 기관이 협약을 해지하더라도 본 협약의 목적달성이 가능한 경우 나머지 두 기관간의 협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5조(기타) 각 기관은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의 원칙 하에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각 기관간의 협의에 의한다.

각 기관은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4월 6일

sba

DMC
C O N E T

DMC
NETWORK
DMC 산학진흥재단

(재) 서울산업진흥원
대표이사 직무대행 김태희
代산업거점본부장 문구선

(사) 디엠씨 코넷
이사장 이방희

(재) DMC 산학진흥재단
이사장 김상범

문구선

이방희

김상범